

문서번호	정책기획과 2459	규제개혁 담당	정책기획 과장	자치행정 국장	부시장	시 장
보존기간	년	이성영	이승우	이재하	이재근	이성택
결재일자	2016. 4. 14.	협 조 자치행정과장 조희국 일자리창출과장 이호재 경제진흥과장 김민철 지광실장 임영도 성과관리실장 최수현 생활민생과장 이영배 전문상담단장 이관희 교육연구실장 김재세				

2016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목 차

I. 추진배경	1
II. 2016년 포항시 규제개혁 추진방향	2
III. 2016년 포항시 추진과제	3
IV. 2016년 추진일정	4
V.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5
① 『수요자중심, 현장중심』 규제개혁 추진	5
②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내실화	9
③ 맞춤형 기업지원 시책 추진	12
④ 규제개혁 추진시스템 활성화	15
VI. 참고자료(1~7)	20

2016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I 추진배경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

- ❖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 적극 개선(15.6월 MP, 수석부서관회의)
- ❖ 규제개혁은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분야에 보다 집중(15.7월, MP, 국무회의)
- ❖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15.11월, VIP, 규제개혁장관회의)

1 추진목표

○ 지역경제 살리는 특화규제 발굴 개선

- ▶ 해묵은 규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

○ 생활분야까지 규제개혁 범위 확대

- ▶ 생애주기별, 국민 생활불편, 손톱 밑 가시규제

○ 삶의 질 개선 및 부정부패 척결

- ▶ 생명·안전 등 민생규제 합리화, 집행재량 최소화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안심사회구현

2 추진방향

- 투자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덩어리 규제 선제적 혁파
 - 특화규제 및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중점 추진, 행자부장관 끝장토론회 안전 선정
- 중소기업·일반시민의 작지만 시급한 현장애로 신속 해소
 - 중소기업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간담회 개최, 규제개혁신문고 활성화
- 시민 생활 속 규제 혁파
 - 시민생활 불편규제 발굴 및 개선, 생활규제 공모(경북도) 적극 참여
-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통한 행태규제 혁파
 - 적극행정 면책, 사전감사컨설팅 등 행태규제 개선 확산
-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규제는 철저한 관리

II

2016년 포항시 규제개혁 추진방향

정
책
목
표

규제없는 포항, 살맛나는 경제, 행복한 시민

추
진
방
향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중심 규제개혁 추진
- 현장소통형 규제개선을 통한 시민체감도 향상

중
추
과
점
진
제

① 『수요자중심, 현장중심』 규제개혁 추진

②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내실화

③ 맞춤형 기업지원 시책 추진

④ 규제개혁 추진시스템 활성화

Ⅲ

2016년 추진과제

(4대 중점분야 14개 세부 추진과제)

중점과제	세부추진과제
<p>① 수요자·현장중심 규제발굴</p>	<p>1 7대 중점분야 현장중심 규제개혁 2 특화규제 및 시민 생활규제 발굴 3 투자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발굴 4 전국규제지도 평가지표 관리</p>
<p>② 자치법규 정비 내실화</p>	<p>1 등록규제 일제 정비 및 감축 2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3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추진</p>
<p>③ 맞춤형 기업지원</p>	<p>1 현장 기업애로 규제사항 해결 2 중앙부처 현장규제 지속 발굴 3 규제신고센터 및 고객보호센터 운영</p>
<p>④ 규제개혁 추진 시스템 활성화</p>	<p>1 규제개혁 T/F팀 운영 2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내실화 추진 3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교육 실시 4 규제개선 우수직원 성과관리 가점 부여</p>

IV

2016년 추진일정

연번	추진과제	추진일정	비 고
1. 수요자 중심 현장중심 규제개혁			
1-1	7대 중점분야 현장중심 규제개혁	3~10월	
1-2	특화규제 및 시민 생활규제 발굴	3~4월	
1-3	투자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발굴	3~6월	
1-4	전국규제지도 평가지표 관리	3~9월	10월 평가
2. 자치법규 정비 내실화			
2-1	등록규제 일제 정비 및 감축	5월, 11월	2회
2-2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마무리	1~3월	
2-3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추진	2~12월	
3. 맞춤형 기업지원			
3-1	현장 기업애로 규제사항 해결	3~12월	
3-2	중앙부처 현장규제 지속 발굴	2~12월	반기별 제출
3-3	규제신고센터 및 고객보호센터 운영	연중	
4. 규제개혁관리시스템 운영 활성화			
4-1	규제개혁 T/F팀 운영	3~12월	11개팀 운영
4-2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내실화	3~12월	반기별개최(2회)
4-3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교육 실시	5월	
4-4	규제개선 우수직원 성과관리 가점 부여	12월	

V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1-1 7대 중점분야 현장중심 규제개혁

◆ 규제개혁 수요가 많은 중점분야를 선정, 분야별 현장방문 팀을 구성하여 규제개선과제 발굴 및 도·중앙부처 건의를 통한 개선

추진계획

- 기 간 : 2016. 3월 ~ 10월
- 내 용 : 분야별 현장방문 등을 통한 개선과제 해결방안 모색
- 중점분야

- ① 투자·경제 : 공장설립, 고용, 기업이전 등 기업관련 규제 및 애로사항
- ② 농·축산업 : 농업소상공인, 농지전용, 농업진흥지역 등 농업관련규제
- ③ 건축·산림 : 산업단지, 건축허가, 산림훼손 등 관련규제
- ④ 해양·수산 : 해양·항만시설, 수산업 등 관련규제
- ⑤ 문화·관광 : 문화재, 축제, 관광업, 숙박시설 등 관련규제
- ⑥ 환경·위생 : 환경 배출시설허가, 폐기물처리 등 관련규제
- ⑦ 보건·복지 : 보건·의료,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관련규제

추진내용

규제분야	현장 방문 운영팀	비 고
투자·경제	투자유치담당관, 강소기업육성과, 일자리창출과, 경제노동과,	예시) 공장증축 애로발생기업 면담
농·축산업	친환경농정과, 농촌지원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농식품유통과	예시) RPC제조시설 대표자 면담
건축·산림	도시계획과, 건축과, 산림녹지과, 공원관리과	예시) 건축사 간담회
해양·수산	해양항만과, 수산진흥과	예시) 영일만항 물류관계자 간담회
문화·관광	문화예술과, 국제협력관광과, 시립미술관	예시) 관광산업 관계자 간담회
환경·위생	식품위생과, 환경관리과, 청소과	예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대표자 면담
보건·복지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출산보육과, 남·북구 보건관리과	예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현장 간담회

행정사항.

- 경북도 운영계획에 따라 주무 담당부서에서 자체 운영계획 수립

1-2

특화규제 및 시민 생활규제 발굴

- ◆ 규제체감도가 높은 특화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 생활속 불편규제 해소를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 추진계획

- 기 간 : 2016. 3월 ~ 4월
- 대 상 : 과급효과가 큰 특화규제,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생활규제
- 내 용 : 특화규제 및 생활규제를 발굴하여 도·중앙부처 지속건의

■ 추진경과

- 포항시 특화규제 선정 및 건의('16. 3, 세부내용 참고1)
 -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비탈면 높이기준 완화
 -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지전용시 비탈면의 높이제한(15m)규제를 완화하여 추가적인 산지 훼손과 용지 추가 매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방지
 - 도시개발사업시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규정 완화
 - 도시개발사업 환지에 대해 공동주택 부지를 제외한 소규모 환지에 대해 건폐율 규제를 완화하여 환지 소유자의 시간적·경제적 애로사항 해소와 건축 경기 활성화 도모
- 시민 생활불편 규제 개선과제 건의('16. 3, 세부내용 참고2)
 - 암환자 의료비 지원관련 제도 개선
 - 전자어업허가증 대민 서비스 개선
 - 도시개발사업 구역내 학교용지 매각문제 해결
 - 농어촌공사 소유 구거의 공익용도 사용료 면제

■ 향후계획

- 시민 생활불편 규제 개선과제 지속발굴 및 건의(연중)
- 국무총리 주재 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4월) 토론과제 선정 추진
- 경북도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16 하반기)를 통한 개선방안 모색

1-3 투자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발굴

◆ 한시적으로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거나, 기업·서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규제유예 과제 발굴

■ 추진계획

- 기 간 : 2016. 3월 ~ 6월
- 추진방향
 - (유예대상) 큰 부작용을 초래하는 시안을 제외하고 경제활동 전반의 규제
 - (유예방식)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예기간 설정
 - (법령개정) 시행령은 국조실 주관, 시행규칙 이하는 부처별 일괄개정
- 발굴대상
 - 창업·투자 활성화 저해 규제 : 입지제한, 진입요건, 각종 부담금 등
 - 기업활동 관련 부담 규제 : 교육·신고 등 준수 의무, 위반행위 제재 등
 - 현장대기 프로젝트 및 5대 핵심산업(조선, 해운, 석유화학, 철강, 건설)
 - 취약계층, 서민 부담완화를 위한 과제 등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한시적 규제완화 대상과제 발굴·제출('16. 3, 국무조정실)
- 대상과제 검토 및 협의조정('16. 4, 국무조정실 및 각 부처)
- 과제 확정('16. 5,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계획)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괄개정('16. 6)

■ 우리시 건의과제(세부내용 참고3)

구분	과제명	부서	구분	과제명	부서
1	공장설립 승인자의 창업사업 계획승인 승계 완화	투자유치 담당관	2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기준 규제 완화	투자유치 담당관
3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기존 공장 증개축 규제 완화	투자유치 담당관	4	LPG 연료 사용제한 규제 폐지	경제노동과
5	주유소 거래상황 기록부 보고의무 부담 완화	경제노동과	6	허가 어선 대체시 소수점 규제 완화	수산진흥과
7	면허어업 결격사유 완화	수산진흥과	8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비탈면 높이기준 완화	도시계획과
9	도시개발사업시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기준 완화	도시계획과	10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안전진단 규제 완화	건축과

1-4 전국규제지도 평가지표 관리

◆ 피규제자 시각에서 지자체별 규제상황을 평가한 전국규제지도의 개선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추진계획

- 기간 : 2016. 3월 ~ 9월
- 평가대상 : 228개 지자체(기초 226, 특별자치도·시 2)
- 평가내용 : 기업체감도(설문조사), 경제활동친화성(조례분석 등)
- 평가일자 : 2016. 10월

2015 포항시 평가결과

- 기업체감도 : 84위(B등급, 71.0점)
 - 규제합리성(A), 행정시스템(B), 행정행태(A), 공무원평가(A), 규제개선인지(B)
- 경제활동친화성 : 52위(A등급, 77.0점)
 - 공장설립(A), 다가구주택신축(A), 음식점창업(A), 창업지원(A), 기업유치지원(S), 실적편차(S), 산업단지(A), 유통물류(A), 환경(D), 공공계약(C), 부담금(B)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2015 전국규제지도 평가결과 분석(~'16. 2)
- 2016 전국규제지도 평가대비 보고회 개최('16. 4. 4, 시장님 주재)
 - '15년 주요성과 공유 및 전국규제지도 저평가 부문 개선방안
- 부서별 개선방안 추진상황 점검('16. 5)
- 2016 전국규제지도 지표 분석 및 제출자료 검토(~'16. 9)

부서별 개선과제(세부내용 참고4)

부서명	개선과제	부서명	개선과제
투자유치담당관	▪공장설립 인허가 기간단축	건설과	▪도로복구비 부담금 납부시기 조정
정책기획과	▪규제개선 행정시스템 강화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위원회 반복심의 완화 등
예산법무과	▪기업대상 행정소송 승소율 개선		▪산업단지조성 개발이익률 조정
일자리창출과	▪기업애로지원단 내실있는 운영	건축과	▪다가구주택 신축 규제완화
	▪폐수배출부담금 부과제도 개선	교통행정과	▪견인대행업체 지역제한 완화
경제노동과	▪소상공인 애로사항 수렴 및 지원	상수도과	▪원인자부담금 분할횟수 조정
식품위생과	▪테라스 영업구간 지정 및 운영	하수도과	▪하수도 사용개시 신고의무 완화
청소과	▪음식폐기물 감량계획서 제출완화		

2-1 등록규제 일제 정비 및 감축

- ◆ 기업, 서민규제 정비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
- ◆ 규제감축 목표 달성 선도적 추진을 통한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

■ 추진계획

- 정비기간 : 반기별 1회(상·하반기별 정비)
 - 상반기 : 5월중, 하반기 : 11월중
- 대상 : 포항시 등록규제 184건(세부내용 참고5)
- 내용 : 규제 증감 현황 및 규제개선 내용 등 실태조사
 - ※ 2016년 정비 목표 : 5%(10건) 감축

■ 추진내용

-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등록규제 신설, 폐지 현황 조사
- 중소기업, 영세소상공인, 농어민 등 주민생활관련 불편규제 개선
- 조례, 규칙 등 제·개정으로 신설, 폐지, 완화된 규제 정리
- 부분별·유형별 통계자료 정비
 - 부분별(30종) : 국토도시개발, 지방행정, 환경, 주택건축도로, 사회복지 등
 - 유형별(4종) : 허가·지정·검사, 행정질서별, 기준설정·금지, 기타
- 등록규제 현황은 규제정보통합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등 공개

■ 행정사항

- 상·하반기 등록규제 일제 정비('16. 5월, 11월) 및 감축 추진
- 중앙부처 규제개선 내용을 조례 등에 적시 반영 조치
- 주요 규제개선 사항 등 언론에 적극 홍보

2-2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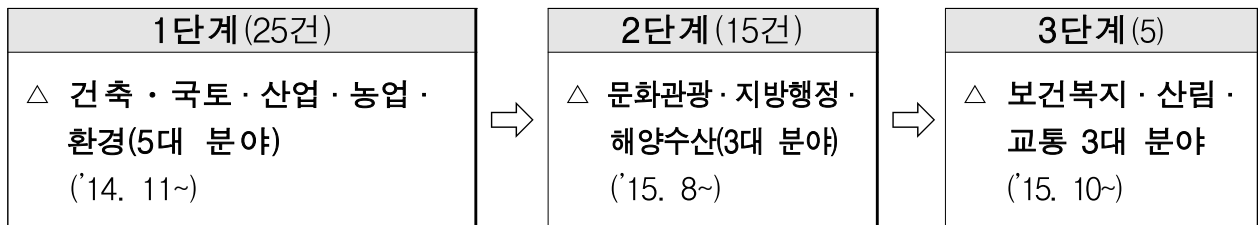
- ◆ 상위법령 개정 자치법규 미반영 사례 등 유형별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과 법제처 권고사항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불편 해소

■ 추진계획

- 기 간 : ~'16. 3월(11대분야), ~'16. 10월(법제처 권고사항)
- 정비대상
 - 불합리한 자치법규 11대 분야 45건
 -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권고사항 8건

■ 추진경과

- 불합리한 자치법규 11대 분야(세부내용 참고6)



-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권고사항(세부내용 참고7)
 -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따른 우리시 정비계획 수립('16. 1월)
 - 8건(상위법령 미반영 3, 상위법령 위반 3, 법령 근거없는 규제 2)

■ 향후계획

- 불합리한 자치법규 11대분야 45건 정비완료(~'16. 3월)
-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권고사항 부서별 정비추진(~'16. 10월)

2-3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추진

◆ 지역시장 경쟁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 및 소비자 후생증진을 위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추진

■ 추진계획

- 기 간 : '16. 2월 ~ 12월
- 우리시 개선과제 : 3건

구분	확정과제 및 규제내용	추진실적
1차	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 (사업활동 제한)	개선완료('13.7.9)
2차	공설시장 설치조례 제13조(가격제한)	검토중
	공설시장 설치조례 제20조(차별적 규제)	개선완료('14.9.29)

☞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추진경과 (공정위 추진)

- ▷ (2009년) 227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여 1,209건 1차 개선과제 확정
- ▷ (2013년) 한국규제학회 용역을 통해 2차 개선과제 발굴
- ▷ (2014년 9월)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2차 개선과제 확정

■ 추진내용

- 공설시장 설치조례 제13조(가격제한) 개정 추진
 - 제13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
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할 수 있다.
- ⇒ 감면대상 구체화 및 유형별 감면율을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

■ 향후계획

- 타 지자체 우수사례 비교분석 및 관련법 검토(~6월)
- 「포항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개정('16. 하반기)

3-1 현장 기업애로 규제사항 해결

◆ 지역 소재 기업의 규제 고충사항 의견을 청취하여 자체개선 및 중앙부처 건의·해결을 통해 최적의 투자환경 조성

■ 추진계획

- 기 간 : '16. 3월 ~ 12월
- 추진부서 : 정책기획과, 일자리창출과(기업애로지원단)
- 내 용
 - 규제개선 건의과제 발굴을 위한 규제엽서 제작·배부
 -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건의과제 확정(규제개혁위원회)
 - 건의과제 해결을 위한 전략수립 및 중앙부처 지속건의

■ 운영방법

- 규제개선 신고엽서 제작·배부
 -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법령 청취를 위해 신고엽서 제작
 - 포항시 기업애로지원단(542명)을 활용 담당 기업체 직접 전달
- 개선과제 확정
 - 접수된 건의과제 중 자체해결 과제 및 중앙부처 건의과제 선정
 - 「포항시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 확정
- 전략수립 및 중앙부처 지속건의
 - 행정자치부 및 국무조정실, 경북도 등 건의경로 다양화

■ 향후계획

- 규제개선 신고엽서 제작('16. 5월)
- 기업애로지원단 교육 및 엽서 배부('16. 6월)
- 규제개혁위원회 개최('16. 7월) 및 중앙부처 지속건의

3-2 중앙부처 현장규제 지속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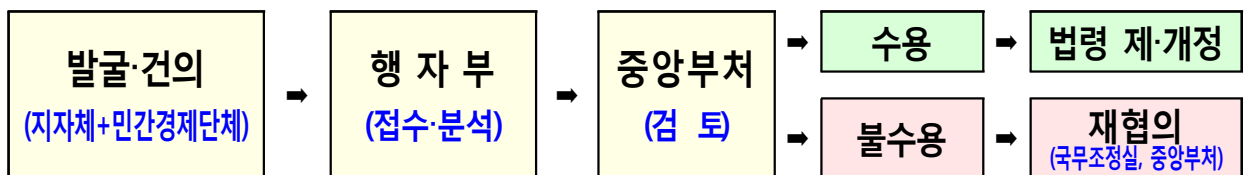
- ◆ 지자체의 투자촉진 등을 저해하는 중앙부처 현장규제를 지속 발굴하여 개선 건의하고 유관단체와 공조하여 대응자료 개발

■ 추진계획

- 기 간 : '16. 3월 ~12월(상·하반기 정비, 제출)
- 발굴대상 : 중소기업 3不(불공정, 불균형, 불합리) 해소, 투자 활성화 촉진, 소상공인 육성, 맞춤형 기업애로·시책 발굴
- ※ '15년 34건 건의 8건 수용

■ 추진내용

- (발굴단계) 수요자 의견 반영, 법규분석, 부처 설득논리 개발
- (협의단계) 부처방문 설명, 자료보완, 현장 공동확인
- (재협의단계) 중요 불수용과제는 국조실 등과 공조, 재협의
- (실행단계) 부처 수용과제에 대한 이행사항을 점검



■ 행정사항

- 발굴단계에서 과제별 문제점 및 필요성을 구체적이고 계량화 하여 기술
- 중앙부처와 유기적 관계 형성 및 지속적 협의를 통한 건의과제 수용률 제고

3-3 규제신고센터 및 고객보호센터 운영

- ◆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들이 자유롭게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제 신고센터 및 고객보호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참여 확산

■ 추진계획

- 기 간 : 연중
- 대 상 : 포항시민
- 기 능 : 각종 불합리한 규제사항 신고접수
 - 오프라인 : 규제애로 원인제공 기관의 상급기관에 신고 및 접수
 - 온라인 : 포항시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개선 온라인 신고 시스템”에 신고된 규제애로 사항 공유 및 협업
 - ※ 행자부, 국조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중소기업 옴부즈만, 경북도

■ 운영방법

- 포항시 신고센터 설치 현황

오프라인	온라인	비 고
포항시청 정책기획과 (규제개혁 담당) ☎054)270-2196~7	포항시 홈페이지 (www.ipohang.org) 전자민원창구	

- 접수시스템 구축강화 및 홍보
 - 홈페이지 개편(접근성 강화), 대시민 홍보강화(읍면동 회의자료, 배너 설치 등)
- 신고과제 사후관리 철저
 - 과제해결이(개선 가능여부) 종료될 때까지 신고인과 지속 교류

■ 향후계획

- 포항시 홈페이지 규제신고센터 접근성 강화('16. 4월)
 - 초기화면 배너설치, 기관별 신고센터 연결링크 구성 등
- 규제신고센터 포스터 부착 및 배너 설치('16. 4월, 정책기획과內)

4-1 규제개혁 T/F팀 운영

- ◆ 규제개혁 T/F팀 운영을 통한 시민중심·현장중심 규제개혁 추진 및 부서간 협업을 통한 규제개혁 추진의 가속화

■ 추진계획

- 운영기간 : '16. 4월 ~ 12월
- 구 성 : 10개팀
 - 단 장 : 부시장
 - 총 괄 : 자치행정국장
- 운 영 : T/F팀별 자체 추진과제 설정 및 운영
 - T/F팀별 자체 추진과제 설정 및 팀장부서 주관 운영
- 주요기능
 - 분야별 현장중심을 통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
 - 팀별 규제사항 자체개선 추진 및 해결방안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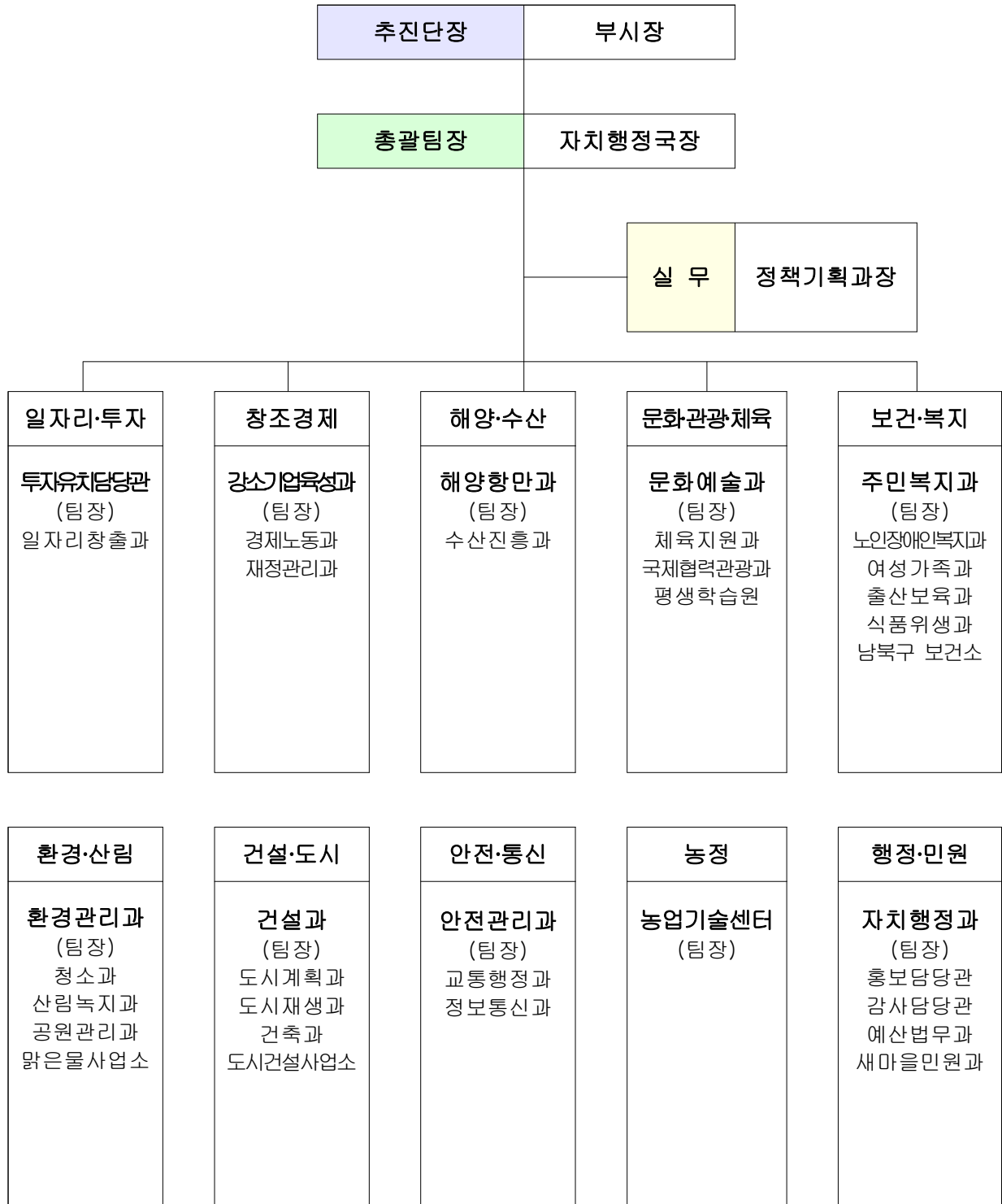
■ 추진내용

- 분야별 현장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현장중심 규제개선 추진
- 자치법규 규제 및 민원사항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 발굴 활동
- 매월 간부회의시 팀별 추진과제 및 개선방안 발표

■ 향후계획

- T/F팀별 과제발굴 및 개선방안 제출(~4월)
- 과제별 개선 진행상황 제출(매월)
- 2016년 팀별 주요성과 발표 및 공유(12월)

■ 포항시 규제개혁 T/F팀 조직도



4-2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내실화 추진

- ◆ 규제개혁위원회 정례회의 개최 및 규제심사 기능 등을 강화하여 규제개혁의 'Think Thank'로 적극 활용

■ 추진계획

- 운영시기 : 2016. 7월, 12월(2회)
- 위원현황 : 15명(당연직 5명, 외부위원 10명)
- 위원임기 : 2년(연임가능)
- 심사기능 강화
 - (기존) 신설규제 심사 위주
 - (변경) 건의과제 확정, 규제폐지 및 완화 등으로 확대
- 심사대상 : 규제의 법적근거 요건, 위임범위 이탈여부, 규제 수준의 적정성, 과제적합 여부 등 중점 심사

■ 심사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심사단계	세부 검토사항
1. 절차적 요건의 타당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절차 이행 여부 • 입법예고시 규제영향분석서 공표 여부 • 부서 자체심사는 충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
2.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규제가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 •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이탈 여부 • 규제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3. 규제내용의 타당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를 도입할 만큼 문제가 중대하고 시급한지 여부 • 규제수준은 적정하게 설정되었는지 여부 • 현실적으로 준수 및 집행될 수 있는 규제인지 여부
4. 검토의견의 객관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는지 여부 • 내부 검토회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여부

■ 행정사항

- 임기만료 위원(시의원) 신규위촉 등 위원회 정비('16. 7월)

■ 포항시 규제개혁위원회 명단

구분	단체별 (직위)	성명	비고 (임기)
포항시	부시장	이재춘	당연직
	자치행정국장	이점식	
	창조경제국장	이기권	
	복지환경국장	김종식	
	건설안전도시국장	양원대	
포항시의회	포항시의회의원	김성조	위촉직 (2014. 9. 1 ~ 2016. 6. 30)
	"	한진욱	
민간위원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김백환	위촉직(1회 연임) (2015. 7. 5 ~ 2017. 7. 4)
	한동대학교 교수 (국제법률대학원)	지승원	
	선린대학교 교수 (경찰행정과)	김미호	
	경상북도포항지역건축사회 (全 회장)	방재원	위촉직(신규) (2015. 7. 5 ~ 2017. 7. 4)
	법무법인 혜성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하나	
	포항대학교 교수 (사회복지과)	장혁란	
	(사)경북여성기업인협의회 (포항지회 수석부회장)	권무자	
	포항상공회의소 (대외협력팀 과장)	송경수	

4-3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교육 실시

- ◆ 규제개혁 정부정책 방향 및 우수사례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규제 마인드를 제고하여 적극 참여 유도

■ 추진계획

- 일 시 : 2016. 5. 17(화) 16:30
- 장 소 : 포항시청 문화동 대강홀
- 주 제 : 규제개혁 정부정책 방향 및 우수사례 소개
- 강 사 : 임택진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수석전문위원
- 교육대상 : 공무원 700명

■ 향후계획

- 타 지자체 우수사례 비교분석 후 우리시 적용여부 검토

4-4 규제개선 우수직원 성과관리 가점 부여

- ◆ 규제개혁 업무추진에 적극적이며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성과관리 가점을 부여하여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

■ 추진계획

- 평가일자 : 2016. 12월
- 내 용 : 규제개선 우수사례 1건당 0.2점~0.5점의 가점 부여

■ 향후계획

- 특화규제, 생활규제 등 분야별 부서·직원 관심도 평가(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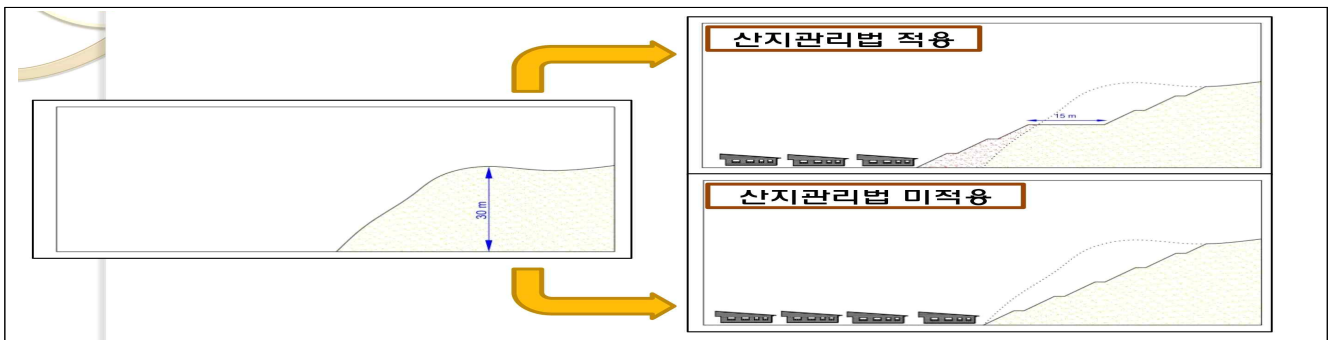
참 고 1

포항시 특화규제 건의내역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비탈면 높이기준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시 대부분의 입지는 산지에 선정되므로 산지전용 필요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시 엄격한 비탈면의 높이 제한규제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허가기준 세부사항) :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5m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 2) 계단식 산지전용인 경우
- 임야개발의 경우 대규모 비탈면 발생이 불가피하여 산지전용허가기준 충족을 위해 계단식 전용을 적용(높이 15m마다 수평면 확보필요)
 - ⇒ 추가적인 대규모 산지 훼손 및 용지추가매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발생



□ 개선방안

- 비탈면 높이 제한의 예외규정인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 적용을 위해 [국토교통부 고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필요
- 규제 완화에 따른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사전 검토 절차 이행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연직높이 50미터 이상의 절토 비탈면은 2종 시설물에 해당되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을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 유사사례

○ 발전소 부지 산지전용 비탈면 높이 예외적용 인정

- 전기설비기술기준(산자부고시) 개정을 통한 규제완화('10. 1. 8)

* (제21조의2) 345kv급 이상 변전소뿐만 아니라 “발전소”도 불가피하게 15m 초과 되는 장대비탈면이 발생할 경우 안전대책 수립 후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개정

□ 개선효과(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개발의 경우)

구 분	완화 전	완화 후	비 고
총사업비	831,629백만원	831,629백만원	
분양면적	3,921,353m ²	3,962,353m ²	증40,000m ²
조성원가	212,077원/m ²	209,883원/m ²	감2,194원/m ²

○ 산업시설용지 분양면적 증가로 인한 비용절감액은 약87억원

□ 관련법령 개정(안)

개정 전	개정 후
<p>제14조(공공녹지·도로·철도 및 환경기초 시설) 산업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공공녹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녹지 단, 유원지는 제외한다)·도로·철도 및 환경기초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p> <p>1. 산업단지의 녹지확보 및 설치기준</p> <p>자. 공공녹지에 대한 설치기준, 방법, 관리 등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행하되, 녹지 조성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수종선택, 식재밀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성하여야 한다.</p> <p>< 신 설 ></p>	<p>제14조(공공녹지·도로·철도 및 환경기초 시설) 산업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공공녹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녹지 단, 유원지는 제외한다)·도로·철도 및 환경기초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p> <p>1. 산업단지의 녹지확보 및 설치기준</p> <p>자. 공공녹지에 대한 설치기준, 방법, 관리 등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행하되, 녹지 조성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수종선택, 식재밀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산지전용후 발생하는 녹지 절·성토면 수직높이가 15m 초과되는 장대비탈면이 발생할 경우에는 절·성토면의 안정성에 대한 전문용역기관(토질 및 기초와 구조분야 전문기술사를 보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등록된 업체)의 검토 결과에 따라 용수, 배수, 법면보호 및 낙석방지 등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p>

도시개발사업시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규정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5호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이 50%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인접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60%이하로 규정)과 차이가 있음
- 공동주택 건축의 경우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제2종보다 용적율이 높아져서 건폐율이 문제되지 않으나, 소형주택 및 상가 건축의 경우 용적율보다 건폐율을 중요시하여 **용도지역 변경요청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① 제2종 - 용적율 250%이하(포함시), 건폐율 60%이하
 - ② 제3종 - 용적율 300%이하(포함시), 건폐율 50%이하
 ⇨ 소형건축물 및 상가 등 건축시 건폐율 상향을 선호
- 용도지역 변경은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5년에 한번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시기에만 조정이 가능하여 시간적·경제적 불편함이 가중됨

□ 개선방안

- (국토부) 도시개발사업 환지에 대해 공동주택 부지를 제외한 소규모 환지에 대해 건폐율 규제를 완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5호 개정

□ 개선효과

- **환지 소유자의 건축 애로 해소로 시간적·경제적 낭비 절감 및 건축 경기 활성화**

□ 관련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안)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 4. 생략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이하생략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 4. 생략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단, 공동주택 환지는 제외한다.) 6. 이하생략

참 고 2

포항시 생활규제 건의내역

연번	과제명	현행 및 개선방안	비고
1	암환자 의료비 지원 관련 제도 개선	<p>(현행) 암환자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치료 후 진단서를 포함한 의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보건소에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p> <p>(개선) 암환자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암관련 진료시 의료비를 사전 감면 →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정보부족으로 의료비 지원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균등한 기회 제공</p>	
2	전자어업허가증 대민 서비스 개선	<p>(현행) 어업인이 전자어업허가증의 내역을 읽기 위해서는 ic카드 리더기가 필요하여 어업허가 내역서 분실시 수산업무를 처리하는 시청, 읍·면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 초래</p> <p>(개선) QR코드를 활용하여 개인이 스마트폰으로 상세내역 조회 및 출력이 가능토록 개선 필요</p>	
3	도시개발사업 구역내 학교용지 매각문제 해결	<p>(현행)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진행시 사업진척에 따라 조합에서 시공사에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공사비 대금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있음</p> <p>(개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합으로부터 조성원가로 학교용지를 우선 매입하고 사업완료시 조성원가와 보유기간 동안의 시중금리를 적용해 해당 기관에 매각하는 방법 도입 필요</p>	
4	농어촌공사 소유 구거의공익용도 사용료 면제	<p>(현행)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자에게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관습적인 도로로 사용해왔다 하더라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실정</p> <p>(개선) 농어촌정비법 제23조의 규정에 목적 외 사용시 공공용이나 공익의 목적(예-도로 등)으로 사용될 경우 사용료 징수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규정 신설 필요</p>	

한시적 규제유예 포항시 건의과제

공장설립 승인자의 창업사업계획승인 승계 완화 (중소기업청)

건의자(지자체명,담당과)	포항시 투자유치담당관
담당자명	김경운 주무관
연락처	054-270-2463

□ 규제 근거법령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33조 제4항
-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5조 제2항
(중소기업청고시 제2014-32호 2014. 6.24 시행)

□ 현행 규제 내용 및 문제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득하였으나, 창업요건에 해당되어 창업사업계획 승인으로 변경 할 경우 공장설립 승인 절차를 무시하고 새로이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여야 함.
- 공장설립 승인 절차시 의제 처리된 산지전용, 농지전용, 개발행위 허가 사항이 승계되지 않아 새로이 창업사업계획 승인시 같은 절차를 신규로 득하여야 함.

□ 규제로 인한 애로 사례

- ○○레미콘에서 2016년 2월경에 공장설립 승인 건을 인수하여 40억원 규모의 레미콘공장을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신설 예정이었으나 투자 보류 상태임.

□ 개선 방안 : **항구적 완화**

- 공장설립 승인 건에 새로운 투자자가 인수하여 창업사업계획 승인시 기존 공장설립 승인시 의제 처리된 인허가 사항의 승계처리
 - 공장설립승인 → 투자자변경 공장설립승인(승계)
 - 공장설립승인 → 투자자변경 창업사업계획승인(미승계)⇒(승계)
 -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5조 제2항 개정

□ 관련 법령 개정(안)

-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5조 제2항 (중소기업청고시 제2014-32호, 2014. 6. 24 시행)

현 행	개 정(안)
<p>제5조(인·허가 처리기준 및 절차) ① 생략</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하거나 공장설립 완료 신고를 하는 자에 대하여 법 상의 창업사업계획승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 지원내용 및 제한내용을 알리고 창업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5조(인·허가 처리기준 및 절차) ① 생략</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하거나 공장설립 완료 신고를 하는 자에 대하여 법 상의 창업사업계획승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 지원내용 및 제한내용을 알리고 창업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설립 승인 절차에 따라 검토한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창업사업계획 승인 절차 진행시 생략한다.</p> <p>③ 생략</p>

반복건의 이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없음
---------	--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기준 규제 완화 (산림청 산지관리과)

건의자(지자체명, 담당과)	포항시 투자유치담당관
담당자명	김현철
연락처	054-270-2465

□ 규제 근거법령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7조 제5호

□ 현행 규제 내용 및 문제점

- 산지전용신고·허가 및 산지전용 일시사용신고·허가를 득한 후 당초 사업자의 사업계획 취소 등의 사유로 목적사업이 취소된 후 다시 당초사업을 진행할 경우 1회에 한하여 복구의무를 면제
- 그러나 당초 사업자에게만 1회에 한하여 복구의무를 면제해 주므로 당초 사업계획 부지에 사업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원상회복 후 다시 전용을 받아야 함.

□ 개선 방안 : **항구적 완화**

- 산지관리법시행령 제5호를 개정하여 산지전용신고·허가 또는 산지전용일시사용신고·허가 받은 자가 당초 목적사업 달성 전에 변경이 될 경우 복구의무를 1회에 한하여 면제하도록 개정
 - 중소기업청 고시(창업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서도 당초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상태에서 사업자가 변경되어 사업이 계속될 경우 부지의 원상회복을 명하지 않고 있음.

□ 기타 참고사항(법령 개정시)

- 산지의 훼손 후 복구했다가 다시 또 훼손해야하는 상황이 발생
 -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행정력 낭비요소 근절

□ 관련 법령 개정(안)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7조 제5호

현 행	개 정(안)
<p>제47조(복구의무의 면제) <u>법 제39조제3항</u>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07.2.1., 2007.7.27., 2008.7.24., 2009.4.20., 2010.12.7., 2011.1.28., 2012.8.22., 2015.11.11.></p> <p>1. ~ 4의2. 생략</p> <p>5.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법 제41조 각 호에 따른 조치 전에 다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로서 목적사업을 위하여 이미 조성한 사업부지(비탈면은 제외한다) 등을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복구의무의 면제는 한 차례만 인정된다.</p> <p>6. 생략</p>	<p>제47조(복구의무의 면제) <u>법 제39조제3항</u>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07.2.1., 2007.7.27., 2008.7.24., 2009.4.20., 2010.12.7., 2011.1.28., 2012.8.22., 2015.11.11.></p> <p>1. ~ 4의2. 생략</p> <p>5.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 외에 양수인·임차인 또는 경락을 받은 자가 법 제41조 각 호에 따른 조치 전에 다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로서 목적사업을 위하여 이미 조성한 사업부지(비탈면은 제외한다) 등을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복구의무의 면제는 한 차례만 인정된다.</p> <p>6. 생략</p>

반복건의 이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없음
------------	--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기존공장 증·개축 규제 완화 (국토교통부)

건의자(지자체명, 담당과)	포항시 투자유치담당관
담당자명	김경운 주무관
연락처	054-270-2463

□ 규제 근거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2 제1항, 제2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2

□ 현행 규제 내용 및 문제점

- 준농림지역에서 1차금속제품제조업, 기계제작, 조선기자재 등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공장설립 승인을 득하여 가동중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기존공장 증축 및 설비증설 불가.
- 한시적으로 기존공장에 대한 특례규정에 의거 증축 또는 개축 허가를 득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용도지역에 대기, 수질 종별 규모에 제약을 받아 추가 증축이 불가함.

□ 규제로 인한 애로 사례

- 포항시 남구 동해면 상정리 ○○번지 인근 ○○ 공장들이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하여 2015년 2월경에 60억규모 공장설비 및 공장증설을 계획 하였으나 투자보류상태임

□ 개선 방안 : **한시적 완화**

- 2001년 용도지역 변경 이전에 공장 허가를 득한 공장에 대해 한시적용 기한을 1년 연장
- 건폐율 완화와 함께 최초 허가당시의 동일업종에 대한 증축 및 개축에 대한 규제 완화 병행

□ 관련 법령 개정(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2 제1항, 제2항

현 행	개 정(안)
<p>제84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① ----- 기존 공장(-----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 다만, 2016년 12월 31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p> <p>② 제84조제1항에도-----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15.></p> <p>1. 생략 가. 추가편입부지의 -----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생략 2. 준공당시부지와 ----- 생략 가. 생략 나. -----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 ----- 1) ~ 3) 생략 다. 준공당시부지와 -----.</p>	<p>제84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① ----- 기존 공장(----- 지정될 당시 공장설립 허가된 것으로서 당시의 공장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 다만, 2017년 12월 31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p> <p>② 제84조제1항에도 -----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공장설립 허가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 제2호의 경우에는 허가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허가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15.></p> <p>1. 생략 가. 추가편입부지의 ----- 이하로서 허가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생략 2. 허가당시부지와 -----생략 가. 생략 나. -----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허가당시부지와 ----- ----- 1) ~ 3) 생략 다. 허가당시부지와 -----.</p>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2 제1항

현 행	개 정(안)
<p>제93조의2(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u>제93조 제2항</u>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 다만, 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 또는 개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12.15.></p> <p>1. 생략 2. 생략 가. 생략 1) 생략 2) <u>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u> 및 「<u>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u>」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 제한 및 용적률 규정에 적합할 것</p> <p>3) 생략 나. 생략 1) ~ 3) 생략</p>	<p>제93조의2(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u>제93조 제2항</u>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공장설립 허가된 것에 한정한다)이 ----- 다만, 2017년 12월 31일까지 증축 또는 개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12.15.></p> <p>1. 생략 2. 생략 가. 생략 1) 생략 2) <u>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u> 및 「<u>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u>」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 제한 및 용적률 규정에 적합할 것.(단, 최초허가 당시와 동일한 업종의 공장 증축 또는 개축에 대하여는 적용을 생략한다.)</p> <p>3) 생략 나. 생략 1) ~ 3) 생략</p>

반복건의 이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없음
------------	--

LPG 연료 사용제한 규제 폐지 (산업통상자원부)

건의자(지자체명, 담당과)	포항시, 경제노동과
담당자명	심순섭
연락처	054-270-3383

□ 규제 근거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40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3조제3호 및 시행령 제34조

□ 현행 규제 내용 및 문제점

- LPG 자동차는 장애인이나 상이 국가유공자(이하 장애인)가 소유·사용하거나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에 한하여 장애인과 공동명의 또는 단독명의로 소유·사용 가능하나 LPG자동차 등록 후 5년 이내에 세대 분리 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 LPG 차량은 장애인 및 상이 국가유공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나 휘발유와 경유 차량 대비 LPG 가격변동 및 연비, 친환경성 등을 고려했을 때, LPG 연료사용제한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규제가 지나친 경향이 있음.
- ▶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이 신설(1999.2.8.)된 1999년도의 휘발유 가격대비 LPG 가격은 23.6% 수준이었으나, 2016. 3월 현재, 54.5%로 두배 정도로 증가 하였음. LPG자동차의 평균 연비는 2001년 휘발유 차량 대비 73% 수준 이었으나, 2014년 현재, 69% 수준 임.
- ▶ 1999년 유가 및 2001년 자동차 연비를 함께 고려하여 1km 주행시 휘발유, 경유, LPG 차량에 대한 비용을 산정해 보았을 때, 각각 90원, 47원, 29원 정도로 LPG 차량 사용으로 인한 혜택은 휘발유 및 경유 대비 각각 3.1배, 1.62배 수준이었음.
- ▶ 2016. 3월 유가 및 2014년 연비를 함께 고려하여 1km 주행시 휘발유, 경유, LPG 차량에 대한 비용을 산정해 보았을 때, 각각 92원, 80원, 72원 정도로 LPG 차량 사용으로 인한 혜택은 휘발유 및 경유 대비 각각 1.15배, 1.27배 수준 임

⇒ 2016.3월 현재, 법 개정 당시(1999년)보다 그 혜택이 크게 줄었음.

⇒ 비교 대상 : 휘발유 자동차 - 3.1 배 → 1.15배

경 유 자동차 - 1.62배 → 1.27배

- ‘글로벌 오토가스 서밋(Global Autogas Summit) 2015’에서 발표 자료 중 독일연방자동차청(KBA)이 발표한 데이터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로 LPG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휘발유 차량 대비 11% 적고, 질소산화물은 경유차량의 1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개선 방안 : **항구적 완화**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액화석유가스의 연료 사용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LPG 차량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자동차 선택권 보장
- LPG 연료사용제한 규정 폐지로 청정연료인 LPG 사용을 확대하여 환경오염(미세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발생을 저감하여 대기 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

□ 참고자료

* 석유제품 평균 소비자 가격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단위 : 원/L)

구 분	1999	2000	2015	2016. 3
휘발유	1191.9	1248.4	1510.4	1358.8
경 유	521.8	612.8	1299.5	1115.2
LPG	282.2	358.7	1097.7	740.7

* 유종별 자동차 평균연비(한국에너지공단 자동차에너지 소비효율 분석집)

(단위 : km/L)

구 분	2001년	2002년	2013년	2014년
휘발유	13.31	12.48	14.94	14.81
경 유	11.02	10.70	13.94	13.91
LPG	9.68	9.42	10.31	10.28

반복건의 이력	▪ 해당없음
------------	--------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 보고의무 부담 완화
(산업통상자원부)

건의자(지자체명, 담당과)	포항시, 경제노동과
담당자명	심순섭
연락처	054-270-3383

□ **규제 근거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 제1항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8 제3호 나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9조 제2항 제4호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별표6 제2호 다목 3)-가)-(1)

□ **현행 규제 내용 문제점**

- 주유소의 거래상황기록부를 전산·전자 또는 서면으로 매주 화요일 까지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기한을 넘기거나 보고하지 않을 경우, 6개월 내에 1회 위반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150만원, 4회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됨.

□ **규제로 인한 애로 사례**

- 최근, 주유소 운영자의 고령화 및 소규모 영세성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주유소 운영중에 매주 거래상황 보고가 너무 힘들다는 민원다수 발생
- 단순 실수로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권고 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며, 그 금액이 너무 과중하다는 여론 팽배.

※ '15.1월부터 3월말 까지 50건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 모두 바쁘거나 잊어버리는 등 단순 실수로 보고를 제 때 못한 것으로 확인 되고 있음.

□ **개선 방안 : 항구적 완화**

- 거래상황기록부 보고 주기를 '매주 화요일'에서 '매월 1일과 15일'로 완화
- 과태료 금액을 1회 위반 경고, 2회 50만원, 3회 100만원으로 완화

반복건의 이력	· 해당없음
------------	--------

허가 어선 대체 시 소수점 규제 완화
(해양수산부)

건의자(지자체명, 담당과)	포항시, 수산진흥과
담당자명	오정화 주무관
연락처	054-270-2754

규제 근거법령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1항

현행 규제 내용 및 문제점

- 제18조(허가어선의 대체 등) ① 법 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어선(부속선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개조하거나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는 경우 총톤수 오차범위를 산정할 때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개정 2014.1.23.>
- 현재 4.7x톤의 어선을 대체하기 위하여는 4.7x톤의 어선을 구해야 하나 4.6x을 구해올 시 타 어선에서 0.1톤을 별도로 구입해야하며, 4.8x톤의 어선을 구해올 시 0.1톤을 버리는 상황이 발생
- 지속적인 어선 구조조정에 따른 어선의 대체 시 소수점 첫째자리 까지 맞추기가 쉽지 않음

개선 방안 : 항구적 완화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1항 개정
 - 제18조 제1항 : 법 제41조에 따라 ~ 대체하는 경우 총톤수 오차 범위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반복건의 이력	▪ 해당없음
------------	--------

면허어업 결격사유 완화 (해양수산부)

건의자(포항시)	포항시 수산진흥과
담당자명	김희돈 주무관
연락처	054-270-2734

□ 규제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10조 4호, 5호, 6호

□ 현행 규제 내용 및 문제점

- 어업은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면허어업의 결격사유인 수산업법 제10조 4호, 5호, 6호에는 면허어업과 관련없이 받은 모든 형(刑)이 면허어업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과도한 규제

※ 수산업법 제10조 4호, 5호, 6호

4. 이 법, 「어장관리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 「어장관리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이 법, 「어장관리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규제로 인한 애로 사례

- 허가어업 위반 사실이 있었던 민원인이 면허어업을 신청하였으나 수산업법 제10조에 의거 면허어업 발급 불가

□ 개선 방안 : **한시적 유예(2년)**

- 법 제10조 4호, 5호, 6호를 면허어업과 관련된 형(刑)을 받은 경우로 한정
 - 제10조(면허의 결격사유)
 4. 면허어업과 관련하여 이법, 「어장관리법」...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면허어업과 관련하여 이법, 「어장관리법」...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면허어업과 관련하여 이법, 「어장관리법」...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반복건의 이력	· 해당없음
------------	--------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비탈면 높이기준 완화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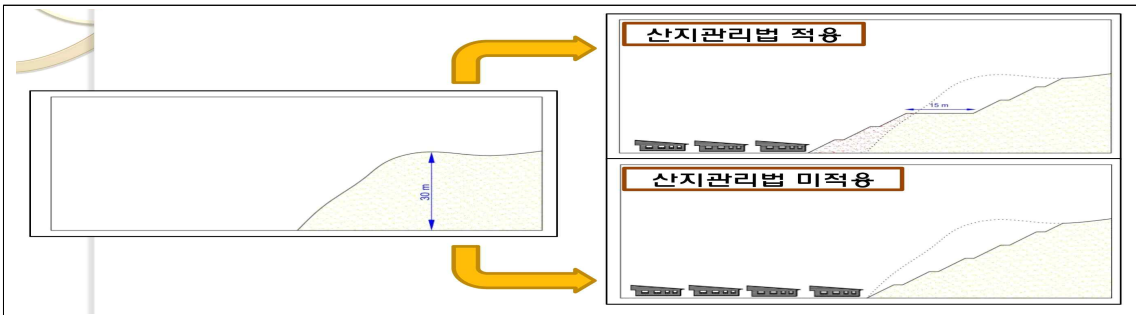
건의자(지자체명, 담당과)	경상북도 포항시, 도시계획과
담당자명	유승욱 주무관
연락처	054-270-3814

□ 규제 근거법령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허가기준 세부사항)
- 국토교통부 고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 현행 규제 내용 및 문제점

-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지전용시 엄격한 비탈면 높이 제한
 - 높이 15m마다 수평면 확보가 필요해 계단식 전용 적용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허가기준 세부사항) :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5m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
 - 2) 계단식 산지전용인 경우
- 추가적인 대규모 산지 훼손 및 용지 추가매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발생



□ 규제로 인한 애로 사례

-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개발의 경우 비탈면 높이규제로 분양면적 감소

구분	완화 전	완화 후	비고
총사업비	831,629백만원	831,629백만원	
분양면적	3,921,353㎡	3,962,353㎡	증40,000㎡
조성원가	212,077원/㎡	209,883원/㎡	감2,194원/㎡

□ 개선 방안 : 한시적 완화(2년)

○ 산업단지 비탈면 높이기준 완화를 위해 관련법령 한시적 개정(2년)

- 국토교통부 고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한시개정('16.7~18.6)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3(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공공녹지·도로·철도 및 환경기초시설) 1. 산업단지의 녹지 확보 및 설치기준 자. 공공녹지에 대한 설치기준, 방법, 관리 등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행하되, 녹지 조성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수종선택, 식재밀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14조(공공녹지·도로·철도 및 환경기초시설) 1. 산업단지의 녹지 확보 및 설치기준 자. 공공녹지에 대한 설치기준, 방법, 관리 등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행하되, 녹지 조성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수종선택, 식재밀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산지전용후 발생하는 녹지 절·성토면 수직높이가 15m 초과되는 장대비탈면이 발생할 경우에는 절·성토면의 안정성에 대한 전문용역기관(토질 및 기초와 구조분야 전문기술사를 보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등록된 업체)의 검토 결과에 따라 용수, 배수, 법면보호 및 낙석방지 등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규제 완화에 따른 안정성이 검증되면 항구적 개정 추진

- 비탈면 높이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사전 검토 절차 이행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연직높이 50미터 이상의 절토 비탈면은 2종 시설물에 해당되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을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 기타 참고사항(유사사례)

○ 발전소 부지 산지전용 비탈면 높이 예외적용 인정

- 전기설비기술기준(산자부고시) 개정을 통한 규제완화('10. 1. 8)

* (제21조의2) 345kv급 이상 변전소뿐만 아니라 “발전소”도 불가피하게 15m 초과되는 장대비탈면이 발생할 경우 안전대책 수립 후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개정

반복건의 이력	▪ 건의경로 : 특화규제(행정자치부) ▪ 제출일시 : 2016. 3. 11. ▪ 건의결과 : 행자부 심사중
------------	---

도시개발사업시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기준 완화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건의자(지자체명, 담당과)	포항시 도시계획과
담당자명	최상용 도시정비담당
연락처	054-270-3472

□ 규제 근거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호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1호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 별표2

□ 현행 규제 내용 및 문제점

-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 도농복합시의 지역적 특성상 도심이 아닌 읍면지역의 도시개발 사업까지 적용하기에는 과도한 기준 적용으로 농·어·산촌에 산림이나 농지의 더 많은 훼손 발생(사업지구 인근이 농지 또는 산림)

□ 규제에 의한 애로 사례

【사례 1】 포항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 910,734㎡ 조성(인구 16,285명 예상)

- ① 현행 법령상 인구수에 따라 97,710㎡ 또는 면적에 따라 81,966㎡ 중 큰 면적인 97,710㎡ 이상을 조성(실제 100,062㎡ 조성예정)
- ⇒ 상기 사업지구 주변은 녹지지역으로 둘러쌓여 도심과 차별화 필요

【사례 2】 포항 곡강지구 도시개발사업 - 265,600㎡ 조성(인구 7,004명 예상)

- ① 현행 법령상 인구수에 따라 21,012㎡ 또는 면적에 따라 13,280㎡ 중 큰 면적인 21,012㎡ 이상을 조성(실제 23,489㎡ 조성예정)
- ⇒ 상기 사업지구 주변은 녹지지역으로 둘러쌓여 도심과 차별화 필요

□ 개선 방안 : **항구적 완화**

- 도농복합시의 특성에 맞도록 과도한 기준의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기준에 대한 규제를 완화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별표2의 1호 개정 : 참고2(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은 면적과 인구 수 대비 산출 면적의 평균값 도입)

□ 기타 참고사항(법령 개정시)

- 기존 녹지의 환경훼손 최소화,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개발 추진
 - 사례1의 경우 평균값 92,583m² 조성, 사례2의 경우 17,146m² 조성

□ 관련 법령 개정(안)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별표2

현 행	개 정(안)
<p>【별표 2】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및 녹지의 확보 기준</p> <p>1.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p> <p>가. 1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p> <p>나. 3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 상주인구 1인당 6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9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p> <p>다. 100만제곱미터 이상 : 상주인구 1인당 9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2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p> <p>2. ~ 9. (생략)</p>	<p>【별표 2】 ----- -----</p> <p>1. -----</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현행과 같음)</p> <p>다. (현행과 같음)</p> <p style="color: red;">라. 가~다목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도농 복합시의 읍면지역은 상주인구와 개발 부지 면적 대비 산출면적의 평균면적 (신설)</p> <p>2. ~ 9. (현행과 같음)</p>

반복건의 이력	▪ 해당없음
---------	--------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안전진단 규제 완화
(국토교통부)

건의자(지자체명, 담당과)	포항시, 건축과
담당자명	정성구 주무관
연락처	054-270-3604

규제 근거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20호

현행 규제 내용 및 문제점

-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여부 결정은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을 검토하도록 하여, 법규상 노후·불량건축물이면서 소유자가 사업 추진의지가 있어도 안전진단 비용과 시간을 소비하는 규제가 되고 있고, 그에 따른 행정력 낭비 소지도 있음

규제로 인한 애로 사례

- 법률에 명시한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되는 소규모 공동주택 소유자의 재건축 사업추진이 안전진단 절차에 의해 지연(3개월정도)
 -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때에는 현지조사 등의 심사를 하여 30일 이내에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함
- 안전진단에 따른 시간적 낭비요소 외에 행정적·경제적 낭비

개선 방안 : 항구적 완화

- 법 제2조3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명시한 노후·불량건축물로 해당될 경우 안전진단을 생략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20조 제1항 5호 신설

□ 관련 법령 개정(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현 행	개 정(안)
<p>제20조(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대상 등) ①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내 건축물”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 4. 생략</p>	<p>제20조(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대상 등) ①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내 건축물”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 4. 생략 5. 법 제2조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해 시장·군수가 전문가들의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생략을 결정한 건축물</p>

반복건의 이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의경로(또는 건의처) : 경북도 건축디자인과 ▪ 제출일시 : 2016. 3. 25 ▪ 건의결과 : 검토 중
---------	--

전국규제지도 부서별 개선과제

공장설립 인허가 기간 단축 시행

| 투자유지담당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공장설립 인허가 기간단축 공장입지 계획부터 준공까지 신속한 처리를 위한 행정규제환경 개선

세부 방안

- 공장입지 문의시 정확한 검토와 신속한 공장설립 상담 민원처리
- 원스톱 처리팀 운영 활성화로 공장설립 인허가 민원처리기간 단축
- 공장설립 가능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공장설립정보 제공
-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서면심의허용으로 민원처리 기간단축

향후 계획

- '16. 4월 : 관련법규 검토를 위한 부서간 협의기간 단축(7일 ⇒ 5일)
- '16. 4월 : 서면심의허용 협의(기존 : 서면심의 불허)
- '16. 6월 : 공장설립 총 인허가 기간 단축 **47일(B등급)⇒31일(A등급)**



규제개선 행정시스템(분야별 간담회 등) 강화

| 정책기획과

분야별 소통과 협업을 통한 규제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직원들의 적극 참여를 위해 성과관리 가점 부여 및 교육을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기반 구축

세부 방안

- 분야별 규제발굴을 위한 내실있는 규제개선 간담회 추진
- 규제개선 우수사례 성과관리 가점 부여(1건당 0.2~0.5점)
- 관내 중소기업 대상 규제애로사항 발굴
- 규제개선 우수사례 마인드 교육 실시(공감대 형성)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화규제 및 시민생활 불편규제 적극 발굴

향후 계획

- '16. 3월 : 지역특화규제(산업단지 비탈면 완화) 행자부 건의
- '16. 4월 : 관내 중소기업 대상 규제발굴 협조 공문 발송
→ 규제해소 T/F팀 구성 운영 및 중앙부처 건의(5월중)
- '16. 5월 :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사례위주의 마인드 교육
※강사 : 중앙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예정
- '16. 12월 : 규제개혁 우수부서 선정 및 성과관리 가점 부여



기업대상 행정소송 승소율 개선

예산법무과

기업체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의 승소율을 개선함으로써 행정행위에 대한 기업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행정의 적법성과 신뢰성 확보 및 투자 활성화 도모

세부
방안

● 기업체 상대 행정소송 사건 패소원인 분석

- 최근 5년간 사건현황 : 총 32건 중 승소 23건, 패소 9건 ※ 승소율 72%
- 주요 패소원인 : 법령 해석 및 적용 오류(4), 재량권 일탈(2), 행정절차적 하자(3)

● 패소원인별 대응체제 구축 및 관련부서 공유

- 불합리한 행정절차 및 제도 개선 →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송을 미연에 방지
- 고문변호사 등을 통한 사전적 법률검토 강화 → 법령 해석·적용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
- 패소사례(원인) 분석 공유 → 동종 사건 재발(패소) 방지, 재량권의 한계 명확화

향후
계획

➢ 상위법령 위배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 자치법규 위임 법령 및 규제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 일괄점검, 정비

➢ 기업체에 대한 침익적 행정처분시 사전 법률검토 확행

- 재량행위나 법령해석이 불분명한 경우 고문변호사를 통한 사전검토 실시

➢ 행정소송 패소사례 및 원인분석 결과 공유

- 새물게시판 활용 지속적인 사례 전파 ⇒ 데이터 추적, 소송사례집 등 발간, 부서공유

기업애로지원단의 내실 있는 운영

일자리창출과

1기업-1공무원 기업애로지원단 운영으로 중소기업의 각종 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적인 기업사랑운동 추진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앞장

세부
방안

- 기업애로지원단의 정기적 기업방문으로 각종 기업애로사항 파악
- 파악된 기업애로사항에 대한 밀착조사를 위한 기업애로전담반 운영
- 기업의 유형별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을 위한 기업애로상담관 활용
- 직원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업애로지원단 워크숍 개최 및 우수사례 소개
- 정기적 우수사례표창 및 인사상 특전부여(인사부서와 협의)

향후
계획

- '16. 4월 : 기업애로지원단 운영계획 및 기업지원시책 소개 교육
- '16. 7월 : 기업애로지원단 활동 우수사례 소개 등 워크숍 개최
- '16. 12월 : 기업애로지원단 추진실적 우수부서 및 직원 선정 표창

폐수배출부담금의 증가산금 부과제도 개선

| 일자리창출과

포항시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조례 중 일부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포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

현황 및
개선안

● 현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폐수처리시설의 설치)에
의거 운영 원인자에게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 : 가산금 : 5%, 증가산금 : 2%
※ 최근 부과 사례는 없음

● 개선안

가산금 : 5% → 3%, 증가산금 : 2% → 폐지 : 지방세기본법 준용

향후
계획

➢ '16. 상반기 : 포항시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개정



지역경제의 기초를 튼튼하게 소상공인 애로사항 수렴 및 지원 강화

| 경제노동과

포항시 소상공인 현황

구분	합계	10인 미만				5인 미만				
		소계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소계	도매· 소매업	숙박· 음식업	교육 서비스업	기타 업종
사업체수	36,011	6,404	2,094	1,307	3,003	29,607	10,215	8,427	1,541	9,424
종사자수	65,044	13,932	5,763	4,172	3,997	51,112	17,215	16,547	2,602	14,748

※ 사업체수는 전체 산업(40,245개)의 89.5%, 종사자수는 전체 산업(193,150명)의 33.7%

소상공인 경영여건

- 국내외 경제상황 및 지역경제 여건 악화 → 소비위축, 업종 간 경쟁심화, 비용상승,
구매패턴 변화 → 매출 감소, 휴·폐업 증가 등

➡ **서민경제 안정 및 지역경기(기업) 체감도에 부정적 영향**



지역경제의 기초를 튼튼하게 소상공인 애로사항 수렴 및 지원 강화

경제노동과

소상공인 애로사항 수렴

소통·협력의 장 마련

- 업종별 대표자간담회, 역량강화 교육 및 시책 설명회 등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포항센터)와의 협업, 규제 애로 신고업서 배부 활동

소상공인 실태조사

- 지속 성장·발전을 위한 DB 구축
- 용역비 70,000천원(추경), 5~9월 중 매출액, 경쟁상대, 존속기간, 경영애로사항 등



소상공인 지원강화

자금지원(창업, 경영안정)

- 특례보증 출연 - 500백만원(50억원 용자)
- 이자차액 보전 - 937백만원
- ※ '15년 942건 15,000백만원 용자

나들가게 육성·지원(국비공모사업)

- 리모델링, 건강관리, 역량강화교육 등 300백만원
- ※ '15년 국비 500백만원 집행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응모

- 유통단계 축소 및 공동구매 등 물류비용 절감으로 가격경쟁력 제고

테라스 영업 시범구간 지정 및 운영

식품위생과

국속조정실 및 중앙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 3단계(15.8.24) “음식점 옥외영업 관련 시설기준” 마련 후 옥외영업이 가능토록 정비대상 과제로 통보

세부 내용

- 식품접객업소 영업자들의 옥외(테라스)영업 요구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대상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
- 식품위생법 시설기준 :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에 조리·가공된 음식만 제공
- 건축법, 도로법 법령 위반불가 및 조리시설 설치 불가
- 옥외영업 허용지역 : 「관광진흥법」지정 관광 특구 및 호텔업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

향후 계획

- '15. 11. 9 : 옥외영업 관련 의견 수렴 설명회 개최
(각 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위생담당, 위생지도담당)
- '15. 12 : 의견수렴 결과 관계법령 위반 및 민원 등 옥외영업 허가 곤란
- 남구청 : 영업장 임의확장 등 법령위반, 인도점령, 야간소음 공해 등 민원야기
- 북구청 : 주차장용도에 테라스 설치, 인도점령, 주변업소 형평성 논란 등
- '16. : 포항운하 지역의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과 함께 관내 관광특구 지정등 구체적으로 옥외영업 허용 사유가 발생 시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옥외영업 허용 적용 특례」 고시 예정



음식폐기물 감량계획서 제출시기 조정

| 정 소 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의 신고, 연간 실적보고 시기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규제완화를 통해 시민들의 경제활동 친화적인 도시 조성에 기여

세부 방안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 다량배출자 감량의무 이행시기를 영업개시 후 1개월 이내(당초 영업 신고 즉시) 신고로 완화
 - 연간 처리실적 보고 시기를 매년 2월말(당초 1월말)로 완화
 - 관련 서식을 관련법령에 따른 서식과 일치시켜 민원인의 혼란 방지

향후 계획

- '16. 3월 : 조례개정(즉시→1개월 이내)을 위한 자료조사 및 관련법 검토
- '16. 4월 ~ 5월 : 조례 개정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 '16. 6월 : 조례 개정 및 공포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 조정

| 건설과

대한상공회의소 『2015년 전국규제지도』 평가결과 B등급으로 나타난 항목중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를 조정하여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세부 방안

- 『포항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도로굴착으로 인한 원인부담금의 징수) 4항에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고 제정되어 있음.
-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를 "원인자부담금은 공사 착수전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중전)선납 ⇒ (변경)공사 착수전까지 납부

향후 계획

- '16. 4월 : 도로점용(굴착) 허가 담당부서(남·북구 건설교통과) 의견 조회
- '16. 5월 : 포항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개정 (제229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도시계획위원회 반복심의 횟수 조정(3회→2회) 및 일부 서면심의 허용

| 도시계획과

기업유치나 공장설립 시에 도시계획위원회의 반복심의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조정하고 일부 서면심을 허용하여 기업과 소상공인의 투자를 촉진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세부
방안

- 도시계획위원회의 반복심의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조정 “안”에 대하여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 일부 서면심의 허용 “안”을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향후
계획

- '16. 4~5월 : 도시계획조례 개정 입법예고
- '16. 상반기내 : 도시계획조례 개정 완료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개발이익률 조정

| 도시계획과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공급 용지에 대해 분양가격을 결정시 적정이윤을 조성원가에 15%의 범위에서 도의 조례로 정하는 이윤율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북도는 10%의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세부
방안

- 관련법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제22조(분양가격 결정)
- 적정이윤율 상승으로 인한 양태
 - 분양을 저조, 산단조성 목적 저해(국비지원 저효과), 시행자 이익 우선
- 현행 제도의 기준이 산업단지 조성 목적 달성에 유불리 정도를 경상북도에 분석 및 조치 건의

향후
계획

- '16. 4월 : 경상북도 관련부서(도시계획과)에 해당 조례 내용 검토 및 조치 요청



다가구주택 신축 건축규제 완화

| 건축과

주거용 건축물이 건축행정 분야에서 허가건수가 가장 많고 시민들의 행정관서 방문이 가장 빈번한 분야로 인·허가 법적 규제를 완화하여 신뢰받는 행정으로 거듭나고자 함

세부 방안

- 건축허가에 따른 조경조성 의무 완화 검토
 - 현행법상(건축법 제42조) 대지면적 200㎡ 이상은 그 대지의 5% 이상 식수 등 조경 설치의무가 명시되어 있어 포항시 건축조례로 조경 조성 의무를 완화 할 근거가 없음 ⇒ **조경조성 의무 완화 불가능**
- 전용주거지역 건축거리 제한 완화
 - 포항시 건축조례상 전용주거지역내 대지 안의 공지는 2m로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시는 현재 전용주거지역이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공지규정 불필요 ⇒ **공지규정 삭제**

향후 계획

- ~'16. 10월 : 포항시 건축조례 개정
(전용주거지역 대지 안의 공지규정 삭제)



견인대행업체 선정시 지역제한 완화

| 교통행정과

견인대행 업무분야의 업체선정에 있어 관내업체로 한정하고 있어 과도한 지역제한으로 분류됨에 따라 규제환경을 개선코자 함

규제 내용

- 포항시 불법주차차량견인대행업무 처리 규정 제4조(대행업체의 선정) 제2항제1호
 - ☞ 모집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1년 이상** 주 사무소 또는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단체·개인
- 경상북도 타시·군 견인대행 현황 및 처리규정
 - ☞ 불법주차 차량 견인시행 시·군 : 경주시,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 ☞ 별도 업무처리 규정은 없으며, 견인대행업체 공모시 신청자격으로 제한

개선 방안

- 『포항시 불법주차차량견인대행업무 처리 규정』 **수정을 통한 규제환경 개선**
- 수정 전
 - ☞ 모집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1년 이상 주 사무소 또는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단체·개인
- 수정 후
 - ☞ 대행업체의 사무소는 포항시에 두어야 한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방법 분할 횟수 조정

| 상수도과

대단위사업 시행시 1억이상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기존 3회 분할납부를 4회로 조정함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사업추진 기여

세부
방안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협약체결시 납부방법을 3회 분할납부를 4회로 조정하여 협약체결
 - 당초 : 3회납부(20%, 30%, 50%)
 - 변경 : 4회납부(20%, 20%, 30%, 30%)

향후
계획

- '16. 3월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방법 변경 협약체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4회 납부로 조정)



하수도사용 조례 규제개선 방안

| 하수도과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해 공공하수도 사용시 별도의 사용개시 신고의무를 개선·완화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도모

세부
방안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의무 개선 검토
 - ⇒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사용자의 신고의무 개선 추진**
(포항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4조 등 개정)
- 하수도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생략여부 검토
 - ⇒ 준공검사 생략시 허가사항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우며 보수 및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어 **준공검사 생략 불가**

향후
계획

- '16 상반기 : 「포항시 하수도사용 조례」 개정 추진



참 고 5

포항시 등록규제 내역

부 문	규제사무명	상위법 근거	자치법규 근거	담당부서
주택건축도로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포항시 건축 조례 제9조	건축과
주택건축도로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건축법 제6조	포항시 건축 조례 제4조	건축과
국토도시개발	가산금	하수도법 제57조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9조	하수도과
국토도시개발	하수배출량의 조사	하수도법 제61조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5조	하수도과
국토도시개발	공사시행	하수도법 제27조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8조 제4항	하수도과
지방행정	정년	지방공무원법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47조	자치행정과
노동	채용결격사유	근로기준법 제4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47조	자치행정과
국토도시개발	준수사항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포항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	환경관리과
국토도시개발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	교통행정과
지방행정	변상금의 분할 납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3조	재정관리과
지방행정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23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0조	재정관리과
지방행정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 매각 대상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등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	재정관리과
지방행정	정년	근로기준법 제4조	포항시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제7조	청소과
농지농정	임대료 결정 및 사전납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제8조의2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9조 제2항	농촌지원과
환경	수수료 및 징수 방법	먹는물관리법 제5조	포항시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	정수과
지방행정	리통반장의 위촉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	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제5조제3항	자치행정과
사회복지	입소의 우선순위	영유아보육법 제28조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0조	출산보육과
사회복지	어린이집의 우선이용	영유아보육법 제28조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8조	출산보육과
사회복지	이용대상	아동복지법 제4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출산보육과
소방민방위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4조	안전관리과
상공업	사용 종료시의 설비 복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	포항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17조	경제노동과
상공업	설비소멸에 대한 책임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	포항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16조	경제노동과
상공업	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의 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	포항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12조	경제노동과

부 문	규제사무명	상위법 근거	자치법규 근거	담당부서
상공업	개설 및 시설기준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	포항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3조의2	경제노동과
관광	점용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포항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해양항만과
환경	판매소의 지정해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8조	청소과
보건위생	과태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보건관리과
농지농정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등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6조	구룡포 과메기산업특구 내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조례	친환경농정과
사회복지	우선 사용 수익 허가	장애인복지법 제47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제6조	재정관리과
사회복지	이용대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포항시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제6조	노인장애인복지과
국토도시개발	특별 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8항	포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4조	교통행정과
상공업	조건등의 부과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조례	경제노동과
환경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제1항	포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 제7조	환경관리과
국토도시개발	위반처분	수도법 제38조	포항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17조	상수도과
문화공보	사용허가	도서관법 제4조, 제27조, 제28조	포항시 시립도서관 사용 조례 제4조	시립도서관
사회복지	사업참여자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노인장애인복지과
주택건축도로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건축법 제54조 제4항 제54조 제4항	포항시 건축 조례 제18조	건축과
국토도시개발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주차장법 제12조의3 제2항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	교통행정과
국토도시개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 설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제44조	도시계획과
국토도시개발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제41조	도시계획과
국토도시개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	도시계획과
국토도시개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제16조	도시계획과
국토도시개발	시설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도시계획과
국토도시개발	물건적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도시계획과
국토도시개발	토지분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7조	도시계획과
국토도시개발	토지의 형질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5조	도시계획과
지방행정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5조	도시재생과
상공업	국내기업 지원대상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	포항시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제22조	투자유치담당관
상공업	지원대상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	포항시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제15조	투자유치담당관

부 문	규제사무명	상위법 근거	자치법규 근거	담당부서
상공업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경제노동과
체육청소년	사용료의 반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제16조	체육지원과
소방민방위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안전관리과
소방민방위	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안전관리과
소방민방위	제설제빙작업의 시기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안전관리과
소방민방위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안전관리과
사회복지	권리양도 제한	지방자치법 제22조	읍·면·동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새마을민원과
사회복지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 취소	지방자치법 제22조	읍·면·동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새마을민원과
토지지적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도로명주소법 제13조	포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8조	도시계획과
환경	수세식변소의 설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 부담금 징수 조례	일자리창출과
환경	가산금 및 증가산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 부담금 징수 조례	일자리창출과
환경	상표사용 지정신청	상표법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농식품유통과
국토도시개발	자연경관영향 검토대상 및 규모	자연환경보전법 제27조, 제28조, 제40조	포항시 자연경관보전 조례 제9조	환경관리과
국토도시개발	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교통행정과
국토도시개발	단위부담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교통행정과
국토도시개발	지원대상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제3조	포항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제3조	교통행정과
국토도시개발	급수공사 준공검사	수도법 제38조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	상수도과
국토도시개발	급수중지와 폐전	수도법 제38조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25조	상수도과
국토도시개발	하도급과 명의 대여의 금지	수도법 제38조	포항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11조	상수도과
국토도시개발	급수공사 대행업자 신고의 의무	수도법 제38조	포항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9조	상수도과
지방행정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조	도시재생과
농지농정	수리계의 해산	농어촌정비법 제126조	포항시 수리계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친환경농정과
농지농정	수리계원의 자격	농어촌정비법 제126조	포항시 수리계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조	친환경농정과
국토도시개발	시공기술 자격취소 처분	수도법 제38조	포항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3조	상수도과
환경	가축사육의 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	환경관리과
국토도시개발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제36조	도시계획과

부 문	규제사무명	상위법 근거	자치법규 근거	담당부서
지방행정	환경미화원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포항시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제6조	청소과
주택건축도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건축법 제80조 제1항	포항시 건축 조례 제42조	건축과
지방행정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1조	도시재생과
지방행정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	포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7조	자치행정과
국토도시개발	대행업 허가	수도법 제38조	포항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4조	상수도과
주택건축도로	가설건축물의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포항시 건축 조례 제11조 제3항	건축과
국토도시개발	흡수정이하의 장치설치	수도법 제38조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상수도과
주택건축도로	도로의 지정	건축법 제45조	포항시 건축 조례 제17조	건축과
주택건축도로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징수	도로법 제64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	건설과
주택건축도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도로법 시행령 제74조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건설과
상공업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경제노동과
국토도시개발	녹지점용 허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공원관리과
국토도시개발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수도법 제38조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19조	상수도과
국토도시개발	공용시설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제39조	도시계획과
상공업	공설시장 사용허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포항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7조	경제노동과
상공업	공설시장 사용자의 신고의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포항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10조	경제노동과
국토도시개발	공사비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수도법 제38조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13조	상수도과
국토도시개발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하수도법 제27조 제3항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	하수도과
주택건축도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건축법 제57조	포항시 건축 조례 제24조	건축과
지방행정	환경미화원 임용	지방공무원법	포항시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제4조	청소과
국토도시개발	주차장의 설치 등	주차장법 제12조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	교통행정과
국토도시개발	정수처분	수도법 제38조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43조	상수도과
지방행정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2조	도시재생과
지방행정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9조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5조	도시재생과
환경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등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7항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제1항	청소과
국토도시개발	수도 사용자의 신고	수도법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21조	상수도과

부 문	규제사무명	상위법 근거	자치법규 근거	담당부서
상공업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3조	경제노동과
상공업	시장관리자의 지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1조	경제노동과
상공업	상인회의 등록취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6조	경제노동과
상공업	농어민직영매장 신청자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1조	경제노동과
상공업	임시시장의 등록취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8조	경제노동과
상공업	임시시장의 등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6조	경제노동과
상공업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5조	경제노동과
보건위생	공설묘지 사용허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포항시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 제4조	노인장애안복지과
보건위생	공설묘지 사용허가의 취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포항시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 제13조	노인장애안복지과
운송물류	면허발급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포항시 개인택시면허업무 처리 규칙 제3조	교통행정과
지방행정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	지방공무원법	포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6조	자치행정과
체육청소년	사용료 및 사용허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제4조	체육지원과
체육청소년	허가의 취소 및 정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제14조	체육지원과
문화공보	사용허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제4조	문화예술과
문화공보	허가취소 등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제6조	문화예술과
상공업	상표사용권의 취소	상표법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제16조	농식품유통과
문화공보	대관허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제16조	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립미술관
문화공보	대관허가의 제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포항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립미술관
농지농정	휴폐업 신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	농산물도매시장관리 사무소
국토도시개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제27조	도시계획과
지방행정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포항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환경관리과
국토도시개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주차장법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	교통행정과
국토도시개발	공원점용의 허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정용허가에 대한 조례 제8조	공원관리과
국토도시개발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주차장법 제8조 제2항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	교통행정과
주택건축도로	건축지도원	건축법	포항시 건축 조례 제14조	건축과
주택건축도로	가설 건축물	건축법 제20조 제1항	포항시 건축 조례 제11조 제1항	건축과

부 문	규제사무명	상위법 근거	자치법규 근거	담당부서
국토도시개발	일시사용신고	하수도법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	하수도과
국토도시개발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제26조	도시계획과
환경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준수사항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2항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등에 관한 조례	청소과
국토도시개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도시계획 조례 제25조 제1항, 제2항	도시계획과
국토도시개발	배수설비 준공검사	하수도법 제27조 제5항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	하수도과
국토도시개발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제13조	도시계획과
운송물류	면허발급 배정비율 및 우선순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인택시면허업무 처리 규칙 제4조	교통행정과
운송물류	거주요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인택시면허업무 처리 규칙 제8조	교통행정과
운송물류	운전경력 산정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인택시면허업무 처리 규칙 제6조	교통행정과
지방행정	과태료의 부과기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6조	도시재생과
환경	청결유지 조치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4조	청소과
환경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기준 및 관리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2항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의2	청소과
국토도시개발	급수설비의 철거	수도법 제38조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47조	상하수도행정과
국토도시개발	과태료 및 행정처분	수도법 제38조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46조	상하수도행정과
국토도시개발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수도법 제38조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17조	상하수도행정과
지방행정	수수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7조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5조	도시재생과
환경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처리방법 등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청소과
국토도시개발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	주차장법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	교통행정과
재정경제	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담배사업법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경제노동과
국토도시개발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수도법 제38조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24조	상하수도행정과
국토도시개발	급수공사의 승인	수도법 제38조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	상하수도행정과
국토도시개발	급수공사 대행업자	수도법 제38조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12조	상하수도행정과
주택건축도로	공개공지의 확보	건축법	포항시 건축 조례 제28조	건축과
지방행정	안전점검의 위탁절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7조	도시재생과
상공업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경제노동과
국토도시개발	분뇨수집, 운반의 대행	하수도법 제41조 제1항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	하수도과
국토도시개발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제32조	도시계획과
주택건축도로	대지안의 공지	건축법 제58조	포항시 건축 조례 제28조의2	건축과
국토도시개발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2	도시계획과
국토도시개발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 서의 건축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제38조	도시계획과

부 문	규제사무명	상위법 근거	자치법규 근거	담당부서
사회복지	수탁자와 시설장의 의무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4조	출산보육과
국토도시개발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제18조 제1호	도시계획과
국토도시개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제23조	도시계획과
국토도시개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제29조	도시계획과
국토도시개발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제33조제1항, 제2항, 제3항	도시계획과
국토도시개발	일반적인 검토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제2항	도시계획과
국토도시개발	토석채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도시계획과
사회복지	고용대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노인장애인복지과
주택건축도로	맞벽건축	건축법	포항시 건축 조례 제25조	건축과
주택건축도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법	포항시 건축 조례 제27조	건축과
환경	유량계 및 pH계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자리창출과
환경	사용개시의 신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자리창출과
체육청소년	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보호법 제31조 제3항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여성가족과
국토도시개발	조건부 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항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	도시계획과
국토도시개발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	도시계획과
국토도시개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	도시계획과
국토도시개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제30조	도시계획과
국토도시개발	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제31조	도시계획과
국토도시개발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모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3조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제34조	도시계획과
국토도시개발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부수시설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제35조	도시계획과
국토도시개발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제43조	도시계획과
국토도시개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4조	도시계획과
지방행정	유료화장실의 신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포항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	환경관리과
체육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청소년 보호법 제31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조례	여성가족과
주택건축도로	대지안의 조경	건축법 제42조 제1항	포항시 건축 조례 제15조	건축과
주택건축도로	식재등 조경기준	건축법 제42조 제1항	포항시 건축 조례 제16조	건축과
주택건축도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건축법 제13조 제2항	포항시 건축 조례 제10조의2	건축과

참 고 6

11대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내역

연번	정비대상 조례	개선방향	담당부서	이행상황	비고
(1단계)					
1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2	개발행위 허가취소 사유 외의 사유 삭제	도시 계획과	공포완료 (‘15. 9. 22)	
2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 제6호 등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등을 원칙적 허용 등	도시 계획과	공포완료 (‘15. 9. 22)	
3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제8조 등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허가취소된 경우 환불	공원 관리과	공포완료 (‘15. 9. 22)	
4	포항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충간소음에 관한 사항도 심의, 조정 하도록 개선	건축과	공포완료 (‘16. 1. 5)	
5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4조	일시적 공사장 진출입로는 토지가격 2% 점용료 부과	건설과	공포완료 (‘15. 9. 22)	
6	포항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일시 무단점용 과태료 1㎡당 10만원 과태료(상한 150만원)	건설과	공포완료 (‘15.10.30)	
7	접도구역 지정 해제 고시	접도구역 해제 고시 등	건설과	공포완료 (‘15.11.26)	
8	포항시 환지청산금 취급규칙 제7조 제1항	법 제37조 제6항에 의거 100분의 38범위로 개정	친환경 농정과	공포완료 (‘15.10.30)	
9	포항시 농가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조례	농업인들이 직접 제조·가공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기준 별도 마련	농식품 유통과	공포완료 (‘15. 9. 22)	
10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55조 제4항	산지유통인 등록 취소 요건 규정 삭제	농산물 도매시장	공포완료 (‘15.12.15)	
11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86조	쓰레기 유발부담금 징수 규정 삭제	농산물 도매시장	공포완료 (‘15.12.15)	
12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58조	출하자 제재 근거 삭제	농산물 도매시장	공포완료 (‘15.12.15)	
13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119조	벌점제도 운용 근거 삭제	농산물 도매시장	공포완료 (‘15.12.15)	
14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벌점제도 운용 근거 삭제	농산물 도매시장	공포완료 (‘15.12.29)	
15	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4조	대규모 점포에 대한 등록제한 및 조건 부과 조건 개선	경제 노동과	공포완료 (‘15.12.15)	
16	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2조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개선	경제 노동과	공포완료 (‘15.12.15)	
17	포항시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제18조	조례가 법을 준용한다는 표현 부적절	환경 관리과	공포완료 (‘15.10.30)	
18	포항시 건축 조례 제13조	조례 기준상 대행 수수료 현실성 부족 개선	건축과	공포완료 (‘15. 6. 9)	
19	포항시 건축 조례 제3조 제3항	법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해 완화	건축과	공포완료 (‘15. 6. 9)	
20	포항시 건축 조례 제17조의 2	법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해 완화	건축과	공포완료 (‘15. 6. 9)	
21	포항시 건축 조례 제14조의 4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 규정 필요	건축과	공포완료 (‘15. 6. 9)	
22	포항시 건축 조례 제11조의 2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검사 없이 사용승인서 교부 가능	건축과	공포완료 (‘15. 6. 9)	

연번	정비대상 조례	개선방향	담당부서	이행상황	비고
23	포항시 건축 조례 제14조의 3	건축사 설계가 필요없는 가설건축물 규정 미비	건축과	공포완료 ('15. 6. 9)	
24	포항시 건축 조례 제28조의 2항	법령상 공개공지 면적기준을 조례에서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지정	건축과	공포완료 ('15. 6. 9)	
25	포항시 건축 조례 제28조 4항 1호	공개공지 확보시 용적을 등 인센티브 산정방식 개정	건축과	공포완료 ('15. 6. 9)	
(2단계)					
1	포항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제14조	보증금 납입사유 외에 조례로 보증금을 내도록 한 규정 삭제	경제노동과	공포완료 ('15.12.15)	
2	포항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제15조 제1항	남은 기간 사용료를 행정재산 허가권자에게 반환하도록 개선	경제노동과	공포완료 ('15.12.15)	
3	포항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제22조	시장이 수취인으로 하는 보험 가입을 하도록하는 조항 개선	경제노동과	공포완료 ('15.12.15)	
4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4조	전년도 사용료보다 5/1000이상 증가한 경우 조례로 감액 개선	재정관리과	공포완료 ('15.10.30)	
5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	조례가 아닌 정관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 개선	예산법무과	공포완료 ('15.10.30)	
6	포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6조	상위법령에 명시된 처분 외에 규정 개선	상하수도행정과	공포완료 ('15.10.30)	
7	포항시 하수도사업설치 조례 제15조	상위법령에 명시된 처분 외에 규정 개선	하수도과	공포완료 ('15.12.15)	
8	포항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 제한에 필요한 사항 규정	해양항만과	공포완료 ('15.12.15)	
9	포항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	해수욕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해양항만과	공포완료 ('15.12.15)	
10	포항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	사용료의 금액과 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	해양항만과	공포완료 ('15.12.15)	
11	포항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4호	취소한 날로부터 2년이내 허가제한(과도한 제한) 개선	해양항만과	공포완료 ('15.12.15)	
12	포항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제3항	민법의 특례를 조례로 정한 사항으로 삭제	해양항만과	공포완료 ('15.12.15)	
13	포항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제2항	점용료 반환하지 않는 규정 삭제 및 분납규정 추가	해양항만과	공포완료 ('15.12.15)	
14	포항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제2항	포괄적인 취소사유를 정한 규정 삭제	해양항만과	공포완료 ('15.12.15)	
15	관광진흥법 제76조 제3항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규정	국제협력관광과	공포완료 ('15.10.30)	
(3단계)					
1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9조	휴양림 입장제한 규정 삭제	산림녹지과	공포완료 ('16. 3.29)	
2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11조	휴양림 내에서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규정 삭제	산림녹지과	공포완료 ('16. 3.29)	
3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제4조	밤샘주차시 행정처분은 위임범위 이탈로 삭제	교통행정과	공포완료 ('16. 2.11)	
4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 제3항	법률의 위임없이 주차장 활용을 제한하는 규정 삭제	교통행정과	공포완료 ('15. 9.22)	
5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관련 조례	조례제정 필요	남구보건관리과	공포완료 ('16. 3.29)	

참 고 7

법제처 조례 개선과제 내역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 근거 없는 규제 신설	계
3건	3건	2건	8건

연번	지방규제 개선과제명	소관부서
법제처 -4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분배	농촌지원과
법제처 -10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종류 명확화	재정관리과
법제처 -11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 수수료 부담 완화	건축과
법제처 -14	공동주택 분쟁 조정 신청요건 완화	건축과
법제처 -17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	도시계획과
법제처 -20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시민단체 참여 보장	도시계획과
법제처 -22	주민의 권리구제 기회 보장	도시계획과
법제처 -26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임의 조정 방지	교통행정과